

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7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02.06

제 출 자 : 광진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[대통령령 제 18603호(2004.12.18)]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, 복식부기 회계제도,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 업무와 관련 승인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증원(안 제2조)

- 총 정원 : 1,129명 ⇒ 1,135명(6명 증)
- 집행기관의 정원 1,106명 ⇒ 1,112명(6명 증)

나.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(별표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」
[대통령령 제18603호, (2004.12.18)]
- 복식부기회계제도,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에 따른 정원승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05. 1. 12 ~ 2. 1(기간중 접수 의견 없음)

라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광진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1,129명”을 “1,135명”으로 하고
제1호중 “1,106명”을 “1,112명”으로 하며
제1호 및 제2호의 총계중 “1,129명”을 “1,135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 및 존속기한) 구 본청에 두는 한시정원은 5명으로 하며,
이중 7급 2명 및 8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
나머지 7급 1명 및 8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《신 · 구조문대비표》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,129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106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3명</p> <hr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/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총 계 : <u>1,129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----- ----- <u>1,135명</u>----- -----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112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3명</p> <hr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/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총 계 : <u>1,135명</u></p>

[별표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(제3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135	847	23	78	186
정무직 계	1	1			
일반직 계	839	571	14	67	186
3급	1	1			
4급	7	5	1	1	
5급	51	23	2 (행정·별정)	10	16
6급	159	127	3	13	16
7급	241	170	3	17	51
8급	260	168	3	21	68
9급	120	78	2	5	35
별정직 계	13	7	5	1	
6급상당	2	2			
7급상당	8	5	2	1	
8급상당	2		2		
9급상당	1		1		
기능직 계	282	268	4	10	
6급	6	6			
7급	13	13			
8급	32	30		2	
9급	73	66	3	4	
10급	158	153	1	4	